

서울특별시 세운초록띠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1583 관 련
----------	-------------

제안연월일 : 2024년 3월 4일
제 안 자 : 도시계획균형위원장

1. 수정이유

- “세운초록띠광장”의 명칭을 현재 사용되고 있는 “세운광장”으로 현행화 하여 시민의 혼동을 최소화하고 조례의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현행 조례에서 광장의 위치로 규정하고 있는 주소는 '09.12.30일 이후 변경되어 현재는 사용되지 않는 지번 이므로 지번 현행화를 위해 조문을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개정조례안 제2조제1호 중 ‘종로구 장사동 116-3 일대’를 ‘종로구 장사동 2-1 일대’로 수정함(안 제2조제1호 수정).

서울특별시 세운초록띠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세운초록띠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1. “세운광장”이란 종로구 장사동 2-1 일대 광장형태로 조성된 장소를 말하며, 해당구역 지상의 부대 시설물 전체를 의미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u>서울특별시</u> <u>세운초록띠광장의 사용 및</u> <u>관리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위하여 <u>세운초록띠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u>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u>세운초록띠광장</u>"이란 종로구 장사동 116-3 일대 광장형태로 조성된 장소를 말하며, 해당구역 지상의 부대 시설물 전체를 의미한다.</p> <p>2. "<u>사용</u>"이란 <u>세운초록띠광장(이하 "광장"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u> 이용함으로써 불특정 다수 시민의 자유로운 광장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p> <p>3. 4. (생략)</p>	<p><u>서울특별시</u> <u>세운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u> <u>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 ----- ----- <u>세운광장</u> ----- -----.</p> <p>제2조(정의) ----- ----- -----.</p> <p>1. "<u>세운광장</u>"이란 ----- ----- ----- -----.</p> <p>2. "<u>사용</u>"이란 <u>세운초록띠광장(이하 "광장"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u> 이용함으로써 불특정 다수 시민의 자유로운 광장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p>	<p><u>서울특별시</u> <u>세운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u> <u>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개정안과 같음)</p> <p>제2조(정의) ----- ----- -----.</p> <p>1. "<u>세운광장</u>"이란 <u>종로구 장사동 2-1 일대 광장형태로 조성된 장소를 말하며, 해당구역 지상의 부대 시설물 전체를 의미한다.</u></p> <p>2. (개정안과 같음)</p> <p>3. 4. (현행과 같음)</p>

서울특별시 세운초록띠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세운초록띠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세운초록띠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세운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세운초록띠광장”을 “세운광장”으로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세운광장”이란 종로구 장사동 2-1 일대 광장형태로 조성된 장소를 말하며, 해당구역 지상의 부대 시설물 전체를 의미한다.
2. “사용”이란 세운광장(이하 “광장”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함으로써 불특정 다수 시민의 자유로운 광장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p style="text-align: center;"><u>서울특별시</u> <u>세운초록띠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위하여 <u>세운초록띠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u>세운초록띠광장</u>"이란 종로구 장사동 116-3 일대 광장형태로 조성된 장소를 말하며, 해당구역 지상의 부대 시설물 전체를 의미한다.</p> <p>2. "<u>사용</u>"이란 <u>세운초록띠광장(이하 "광장"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함으로써 불특정 다수 시민의 자유로운 광장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u></p> <p>3. 4.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u>서울특별시</u> <u>세운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 -----<u>세운광장</u>----- ----- -----.</p> <p>제2조(정의) ----- -----.</p> <p>1. "<u>세운광장</u>"이란 종로구 장사동 2-1 일대 <u>광장형태로 조성된 장소를 말하며, 해당구역 지상의 부대 시설물 전체를 의미한다.</u></p> <p>2. "<u>사용</u>"이란 <u>세운광장(이하 "광장"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함으로써 불특정 다수 시민의 자유로운 광장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u></p> <p>3. 4. (현행과 같음)</p>